

경상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소속기관 및 부서 : 경상북도 해양수산국

2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년 2월 16일, 최덕규 의원 외 20명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2월 19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3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

(2024년 2월 27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)

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최덕규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영일만항의 국제여객부두('20.11월)와 국제여객터미널('23.12월) 등 크루즈 기반시설 구축으로 크루즈산업의 발전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,
- 크루즈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·시행과 재정지원 방안 등 체계적인 크루즈산업 육성을 통해 국내·외 관광객 유치 및 연관 산업 발전 등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(안 제3조)
-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 방안(안 제5조)
- 재정지원 대상·범위 등 재정지원 방안 마련(안 제9조 ~ 제14조)

4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이진영)

가. 본 조례안은

- 경상북도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,

나.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조는 상위법인 「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것이며, 법률에 없는 '모항'과 '크루즈연관사업'이라는 용어를 추가함.
- 안 제3조는 도지사로서 하여금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, 「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에서 “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”는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.
- 안 제4조는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해 규정함.
- 안 제5조는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,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규정이라고 사료됨.
-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, 기능 및 구성,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임.

-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의 대상 및 범위, 지원기준, 지원금의 교부와 정산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, 재정지원의 근거 마련을 통해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적절한 규정이라고 판단됨.
- 안 제15조는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- 안 제16조는 크루즈산업 육성과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명시함.
- 안 제17조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다른 조례의 적용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18조는 시행규칙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.

다. 종합 검토 결과

-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, 도내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,
-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침체기를 거쳤던 크루즈산업이 세계 각국이 점차 일상을 회복함에 따라 다시 약 90% 이상 운항이 재개되는 등 재 활성화되고 있으며,
- 정부에서도 제1차 기본계획에 이어 제2차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(' 23 ~ ' 27)을 통해 지속적으로 크루즈산업의 활성화와 기반조성 마련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.
- 이에 발맞춰, 크루즈시장에서의 영일만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

동북아 크루즈시장의 핵심항만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책적,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됨.

- 아울러, 관련 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의 필요성 및 정당성이 인정되며,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적정하게 입안된 조례안이라고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「없음」

6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7. 수정안의 요지 : 「없음」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「없음」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